

O-1 전통주류 지식재산권 현황 및 상표 유래 분석

The Analysis of Brand Origin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 Status of Tradition Liquor

안윤수·전영미*·김미희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Yoon-Su, Ahn · Young-Mi, Jun* · Mi-Hee, Kim

National Rural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NIAST, RDA

I. 연구의 필요성

국내 전통주는 그 다양성과 함께 단순 음주의 효과뿐만 아니라 건강과 보신을 동시에 도모하는 ‘약용주(藥用酒)’로서의 자리를 확보하고 있으며 식품의 기능성이 특별히 강조되는 식품시장의 흐름 속에서 외국의 유명주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쌀, 포도 등 WTO와 FTA체제하에서 과잉생산과 가격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산물로 전통주를 생산함으로써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여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수입주류의 대체와 전통문화 보전·계승에 상당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통주에 대한 홍보부족, 소비자들의 인식부족, 상표의 다양화 및 유사상표의 범람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전통주에 대한 신뢰성 저하 및 제품선택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전통지식자원의 산업화가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지만 이들 제품의 상표화를 위한 지재권 체계 및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미등록 상표 전통주의 경우, 자칫 잘못하면 유사상표의 제품출시로 인해 어렵게 제품을 개발한 업체의 상표권이 침해당할 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제품의 신뢰도와 이미지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촌 전통지식자원을 활용한 대표상품으로 국내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전통주류를 선정하여 전통주의 권리확보를 위해 선행단계로서 지식재산권 현황 및 상표에 대한 유래 분석을 실시하였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선정

농촌 전통지식자원을 활용한 대표상품으로 국내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전통주류를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통주는 그 다양성과 함께 단순 음주의 효과뿐만 아니라 건강과 보신을 동시에 도모하는 ‘약용주(藥用酒)’로서의 자리를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식품의 기능성이 특별히 강조되는 식품시장의 흐름 속에서 외국의 유명주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정부는 전통 민속주 기능보유자의 발굴과 농민 또는 생산단체의 과실주 제조허가 기준 완화 등 전통 민속주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의 농가소득 증대와 수입외국산주류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가치 또한 크기 때문에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2. 조사내용 및 분석방법

국내 전통주 385종에 대해 상표명, 주종별 제조주체, 주종별 지식재산권 현황, 국가·지방자치 단체의 전통기술 지정자 인증제도 현황, 주종별 상표 유래, 사용재료 등을 조사하였다. 전통주에 대한 분석은 SPSS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논의

1. 전통주 지식재산권 현황

1) 주종별 제조주체

총 조사점수 385점 중 제조주체는 가양주형태인 개인이 25개(0.7%)로 약주나 일반증류주의 경우가 해당되었다. 주식회사형태의 기업이 대다수인 304개(78%)로 나타났으며, 이밖에 조합이나 기타가 조합 9.8%로 나타났다. 주식회사형태의 경우 5인 미만의 영세한 업체도 개인이 아닌 기업의 형태에 포함이 되었다.

<표 1> 주종별 제조주체

주 종		조사수	개인	기업	조합	기타
발효주류	탁주	59	1	58	0	0
	약주	140	11	112	9	8
	청주	6	0	6	0	0
	맥주*	1	0	0	0	1
	과실주	58	1	44	7	6
증류주류	소주	33	3	30	0	0
	일반증류주	54	10	27	16	1
	리큐르주	34	1	27	6	0
합 계		385	27	304	38	16

*맥주: 경기도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경희대학교, 김포대학 컨소시엄 개발사업. 인삼, 맥아즙, 호프, 쌀, 물과 함께 제조한 새로운 형태의 주류. 인삼의 첨가로 맛과 기능성 부각

2) 주종별 지적재산권 획득현황

<표 2> 지적재산권 획득 현황

주	종	조사수	상표등록(%)	상표출원(%)	미조치(%)※
발효주류	탁주	59	18	23	18
	약주	140	27	48	65(7)
	청주	6	3	2	1
	맥주	1	0	0	1
	과실주	58	13	18	27
증류주류	소주	33	18	12	3(2)
	일반증류주	54	11	19	24(9)
	리큐르주	34	12	7	15(7)
합	계	385	102(26)	129(34)	154(40%)

※ 미조치는 ()의 비상품화 주류 포함

총 조사 중 전통주류의 지적재산권은 상표등록 102개(26%), 상표출원 129개(34%)였으며, 미조치된 주류는 154개(40%)로 나타나 지적재산권 등록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출시된 제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주종별 국가·지방정부의 지정 현황

총 조사주류 중 국가 및 지자체의 전통기술 보유자 지정 인증제도에 의한 지정자는 총 98명(25%)으로 파악되었다. 주종별 국가 및 지방정부의 지정내역을 분석한 결과 무형문화재의 경우 42개로 약주 및 일반 증류주가 해당되었다. 국가지정명인은 28개로 약주, 소주 등, 향토지적재산의 경우 16개로 탁주, 약주에서 주로 지정되었다.

<표 3>국가·지방정부의 지정 현황

주종	조사수	무형문화재 ¹⁾ (국가, 지방)	국가지정 명인 ²⁾	향토지적 재산 ³⁾	기타 ⁴⁾	합계	
발효주류	탁주	59	1	0	7	1	9
	약주	140	16	13	7	7	43
	청주	6	1	0	0	0	1
	맥주	1	0	0	0	0	0
	과실주	58	2	2	0	2	6
증류주류	소주	33	5	5	0	1	11
	일반증류주	54	15	4	2	0	21
	리큐르주	34	2	4	0	1	7
합계	385	42	28	16	12	98	

1)문화관광부장관지정 2)농림부장관 전통식품명인지정 3)지장자치단체지정

4)기술인증, 특허, 각종 시상

4) 주요 대중주의 지식재산권 및 지정 현황

<표 4> 주요 대중주 지식재산권 및 지정 현황

주종	조사수	상표등록	상표출원	향토 지식재산	무형문화재	기타	
발효주류	막걸리	34	8	14	2	0	1
	동동주	14	3	6	3	1	0
	매실주	9	5	1	0	0	0
	머루주	13	1	4	0	0	0
	복분자주	21	3	10	0	2	4
증류주류	소주	27	15	12	0	3	3
합계		118	35	47	5	6	8

주요 대중주라고 할 수 있는 막걸리, 동동주, 매실주, 머루주, 복분자 등 발효주류와 증류주인 소주 등 전체 118종의 제품 중 상표등록은 35종(29.6%), 상표출원은 47종(39.8%), 향토재식재산 5종(4.2%), 무형문화재 6종(5.1%), 기타 8종(6.8%)으로 나타났다.

2. 전통주류 상표의 유래 분석

1) 주종별 상표의 유래

전통주 상표는 곡류, 과일, 화초, 수목, 뿌리 등의 사용 재료로부터 유래한 것이 187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산, 지명, 하천 등의 고유명사를 이용한 것이 176종(45.6%)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고유명사, 사용재료, 제조자, 제조업체, 제조방식 등 두 가지 이상 결합되어 복합적으로 사용된 상표가 116개(30%)로 나타났다.

<표 5> 상표 유래 분석

주종	조사수	상표수	고유 명사	재료	제조 자	제조 업체	제조 방식	기타	복합	
발효주류	탁주	59	59	39	27	0	3	6	4	22
	약주	140	139	62	69	0	13	3	31	41
	청주	6	6	1	2	0	1	0	3	1
	맥주	1	1	1	1	0	0	0	0	1
	과실주	58	58	31	50	0	5	0	8	32
증류주류	소주	33	31	6	1	0	6	2	17	0
	일반증류주	54	54	22	10	0	3	0	23	7
	리큐르주	34	34	14	27	1	2	1	7	12
합계		385	382	176	187	1	33	12	93	116

2) 상표 유래의 세부내용

상표에 사용된 고유명사는 지명(123종), 산(39종), 하천(6종) 등의 순으로 유래되었으며, 사용재료에 의한 것은 과일(60종), 수목(42종), 뿌리(35종), 곡류(29종), 화초(24종), 기타(3종)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상표 세부 유래 분석

주 종	조사수	상표수	고유명사				재 료						
			산	하천	지명	기타	곡류	과실	화초	수목	뿌리	기타	
발효주류	탁주	59	59	5	2	32	3	15	1	1	0	6	2
	약주	140	139	11	1	49	4	9	6	16	23	18	1
	청주	6	6	0	0	1	0	0	0	1	1	0	0
	맥주	1	1	0	0	1	0	0	0	0	0	1	0
	과실주	58	58	20	0	8	1	0	50	1	2	1	0
증류주류	소주	33	31	0	0	8	6	1	0	0	0	0	0
	일반증류주	54	54	1	0	17	2	1	0	4	6	2	0
	리큐르주	34	34	2	3	7	3	3	3	1	10	7	0
합계		385	382	39	6	123	19	29	60	24	42	35	3

3) 복합상표의 유형분석

<표 7> 복합상표의 세부 분석

주종	조사수	상표수	복합	고유명사 +재료(A)	제조주체 +재료(B)	고유명사 +제조주체(C)	제조방식 +기타	
발효주류	탁주	59	59	22	19	2	0	1
	약주	140	139	41	31	7	1	2
	청주	6	6	1	0	1	0	0
	맥주	1	1	1	1	0	0	0
	과실주	58	58	32	27	3	1	1
증류주류	소주	33	31	0	0	0	0	0
	일반증류주	54	54	7	6	0	1	0
	리큐르주	34	34	11	10	1	0	0
합 계	385	382	115	94	14	3	4	

4) 복합상표의 유형별 사례

유형	개수	사 례
고유명사+재료(A)	94	포천옥수수동동주, 심봤다소백산장뇌주, 무주구천동머루와인, 지리산머루주, 포천삼국주, 가회울주, 포천쌀막걸리, 김포침삼포, 금산송주, 이동쌀막걸리, 운악산더덕막걸리, 선운산복분자주, 포천신선초막걸리, 영월동강좁쌀동동주, 서울쌀막걸리, 나주배술이로22, 지리산참복분자, 한라산청정복분자주, 지리산산머루술, 보성녹차주, 금산인삼주, 감악산머루주 등
제조자 +재료(B)	14	금산대나무통술, 금산국화주, 부귀홍삼막걸리, 포천왕가인삼막걸리, 고천이강주, 고천복분자주, 보해복분자주, 배상면주가혹미주, 화삼가시오가피술골드, 용진사술잎주, 연수당산머루주, 내국농이주, 해인장뇌산삼주, 두레양저봉와인
고유명사+제조주체(C)	3	연수당지리산복분자주, 대강소백산신선주, 대대로진도홍주만홍
제조방식+기타	4	황토방숙성가시오가피주, 황토방숙성막걸리, 황토방쌀막걸리, 탄산캔막걸리월배
기타	4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조주체는 개인 0.7%, 기업 78%, 조합 9.8%로 나타났다.

둘째, 상표등록 102종(26%), 상표출원 129종(34%)이었으며 미등록된 상표는 154종(40%)으로 나타났다. 특히, 탁주의 경우 65종(46.4%)이나 미등록 상표로 출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국가 및 지자체의 전통기술보유자지정인증제도에 의한 지정자는 총 98명(25%)으로 나타났다(무형문화재 42명, 국가지정명인 28명, 향토지적재산 16명, 기타 12명).

넷째, 상표명에 대한 유래분석 결과, 과실(60종), 곡류(29종), 수목(42종), 뿌리(35종), 화초(24종), 기타(3종) 등의 사용 재료로부터 유래된 것이 187종(48.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산(39종), 지명(123종), 하천(6종) 등의 고유명사에서 유래된 것이 176종(45.6%)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고유명사, 사용재료, 제조자, 제조업체, 제조방식 등 두 가지 이상 결합되어 복합적으로 사용된 상표가 116종(30.1%)으로 나타났다. 특히, 탁주의 경우 재료보다는 고유명사(지명>산>하천 순)에서 유래. 약주, 과실주 및 리큐르주의 경우 사용되는 재료명(과실>수목>뿌리>화초>곡류 순)에서 유래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현재 상당수 경영자들의 지적권 관련 문제에 대한 인식 부족 현상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영자를 대상으로 지적권 관련 교육 실시 및 상표등록의 중요성 홍보 등 권리화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미등록 상표 전통주의 경우, 자칫 잘못하면 유사상표의 제품출시로 인해 어렵게 제품을 개발한 업체의 상표권이 침해당할 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제품의 신뢰도와 이미지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최근 지방자치 단체를 중심으로 각종 브랜드의 홍수를 이루며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전통주에 있어서도 유사한 상황이다. 현재 국내 출시중인 전통주 상표의 경우, 지명이나 전통주에 이용되는 재료명에서 유래된 상표명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유사한 상표명이 너무나 많아 소비자에게 상표 기억과 제품 선택에 혼란을 주기 쉽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고 차별적으로 유통되기 위해 지역특유의 고유한 제품임을 알리는 지리적 표시제 단체표장 등록과 아울러 소비자에게 쉽고 강하게 인지될 수 있는 차별화된 상표명이 요구된다. 또한 사회전반적인 웰빙 트렌드의 확산에 따른 소비자의 건강지향적인 술 선호 경향에 따라 건강을 고려한 기능성 전통주의 상표 출원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건강기능성 약주로써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학술연구를 통해 사용되는 재료의 효능과 기능성을 과학적이고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아울러 지역의 부존자원이나 지역축제 및 향토음식, 각종 생약재 등과 결합하여 건강기능성과 지역성을 부각시킨 다양한 복합상품개발 및 상표개발을 해야 할 것이다.